

●환경부공고제2018-815호

「2022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환경부고시 제2017-240호, 2017.12.28)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2022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 재활용 목표율」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속적으로 의무율을 초과하여 재활용이 달성되고 있는 복합재질 필름류에 대한 재활용 의무율을 상향하여 인건비, 잔재물 처리비 등 지속적으로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폐비닐류 재활용업계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강화됨. 또한 LED 교체수요로 인한 형광등 출고·수입량의 급감 및 폐형광등 발생량 급증에 따라, 재활용지원금의 소진으로 인한 수거 중단 및 적체가 우려되고 있어, 두 품목에 대한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상향 조정하여 재활용의무를 현실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2022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 재활용 목표율」 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1, 7389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byungsu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64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와이플러스건설(주)(하미영)

나. 전화번호 : 031-351-8754

2. 명칭 : 날개형 보강재가 형성된 자착형 발포 폴리에틸렌 시트를 2중 교차 포설하여 접합부의 일체성을 확보한 3중 복합방수공법(Y-Plus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방수 / 복합방수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발포 폴리에틸렌 시트재와 폴리우레탄계 도막 방수재를 복합화한 기술로 제조 과정 시 폴리에틸렌(Polyethylene)을 가교 발포하여 유연성을 부여한 발포폴리에틸렌 시트 방수재 “플러스 시트재”를 1차, 2차 포설하는 과정에서 시트와 일체화 되어있는 날개형 보강 부직포를 통한 접합부형성 및 상하부 시트 간 접합부를 교차 형성함으로써 수밀성을 향상 시켰으며, 또한, 시트 방수층 상부에 도포되는 폴리우레탄계 도막 방수재 “플러스 도막재”는 부직포 층으로 합지되어 있는 플러스 시트 방수층 상부에 도포되기 때문에 도막, 시트 간 일체화된 3중의 방수구조를 형성하여, 보다 튼튼하고 수밀한 방수성능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장기적 방수 안정성능을 겸한 기술로 건축 구조물의 장기 내구성, 수밀성능 증진 등 이를 구현한 3중 복합방수기술 ”와이플러스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범위>

날개형 보강재가 일체화 합지된 플러스 시트를 2중으로 포설 하며, 시트 포설 시 하부 시트와 상부 시트의 접합부가 동일 직선상에 서로 일치되지 않도록 교차 시공하고, 시트상부에 플러스 도막재를 도포함에 따라 3중 복합방수층을 형성하는 Y-Plus System에 관한 것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18-973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해외에서 신종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및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사용금지 근거 구체화 등 그간 법령 운영에 있어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